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를 말한다!”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Speak out against EPS,
Exploitation and No-Rights!**

Migrant Workers' Testimony

- 일시: 2021년 8월 22일(일)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증언대회 순서 사회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취지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_____2
 - 사업장 변경 제한에 묶인 노동자 - 네팔노동자 나라얀_____3
 - 농업노동자 착취와 차별 - 캄보디아노동자 께오짚티_____4
 -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 방글라데시노동자 무사_____6
 - 퇴직금 회피 강제 사직 - 네팔노동자 카플레_____8
 - 민주노총 발언 - 박희은 부위원장_____9
 - (첨부) 상담사례_____10
 - 상징의식

<발언문 1>

이주노동자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우리 존재는 쓰다가 버리는 1회용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휴일도 별로 없이 장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 행동을 할 수 없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하고,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들이 근로조건을 비롯해서 아무 것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계약기간 연장도 할 수 없어서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취급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힘들 때 쉬지 못하고, 아플 때 제시간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위험한데 안전 장비 제대로 주지 않고 안전 교육도 하지 않고, 다치면 산재처리 안하고 병원에 갈 때 공장에서 일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쳤다고 하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안주고 그냥 일 시킵니다. 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면서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리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공장, 농장에 출퇴근 기록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신고하면 고용기간 연장해주지 않을까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신고도 잘 못합니다. 사업주, 한국인 관리자, 동료 직원의 폭언, 폭행, 괴롭힘도 종종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최저 이하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주 허락이 없거나 사유 증명을 못하면 사업장 이탈을 하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탈하는 노동자들은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 실현해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짓밟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해서 사장들이 많이 이윤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장의 불법 부당한 한마디도 이주노동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게 만

드는 인종차별적인 제도입니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농축산어업 노동자 착취와 차별, 만성적인 임금체불, 높은 발생율의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사업장 내 차별과 인격 무시 등등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직 사업주의 권리만 대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17년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계속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문 2>

네팔 노동자 나라얀(Narayan) - 아파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저는 이주노동자 나라얀 라우트입니다. 저는 4년 10개월 계속 경기도에 있는 한 도금 공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2년 된 무렵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거야 라고 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약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주일에 1번, 3주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리는 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철 제품을 자주 들어야했 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일할 수 없다, 사업장 이직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사장한테 얘기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일 물건 들어올리는 일 절대로 하면 안된다, 이렇게 계속 하면 허리 못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누구나 허리 아파, 다른 공장에 갈수 없어, 여기 일 해야돼,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라고 하면서서 이직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하기 시작 했습니다. 한달 일한 후 다시 허리 아프기 시작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했고 시술도 했습니다. 다시 사장한테 다른 데 갈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6주 쉬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 일 다시 하면 재발이 됩니다. 사장한테 아무리 직장 변경할 수 있도록 이직서를 써달라고 해도 안써줍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서 가지고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진단서 있어야 하고 소견서로 우리가 사장한테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허리 아파서 일할 수 없다고 소견서에 써져

있어도 고용센터는 자기들이 얘기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건강문제 때문에도 사장은 사업장 변경 해주지 않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 일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사장은 제 건강보다 공장 일, 계약기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허리가 안아프면 일 할수 있는데, 이 일을 할수 없는데도 사장이 일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노동입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한국에 와서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고용허가제에서 모든 권리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허가제에 모든 권리 사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허락 없이도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 너무 아프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바꿔서 노동허가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발언문 3>

캄보디아노동자 께오짚티(Keo Chanthy)- 농업노동자 착취와 차별

(사례 정리)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불법가건물 숙소 제공 명목으로 임금 갈취(월 200,000~240,000원), 근기법 제21조 위반

2019년 4월 16일 입국, 지난 7월 18일까지, 밀양시 산외면에 거주하면서 인근 4개의 장소, 5 개동의 깻잎 비닐하우스에서 깻잎 재배 수확노동을 하였음. 이 농장의 상시노동자는 모두 이주노동자로서 2명~3명임.

사업주는 하루 11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하루 8시간을 노동하게 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점심휴게시간 12시~13시까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매일 10시간을 노동하게 하였음. 그리고 8시간의 임금만을 산정하거나 그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즉, 월노동시간이 260~280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200~210시간 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음.

2019년 5월의 임금의 경우, 월 노동일이 28일이고, 실제 노동시간은 280시간인데, 임금은 1,580,300원 만을 지급하였음. 이 때 최저임금은 280시간*8,350원= 2,338,000 원임. 설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이고 추가노동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때 최저임금은 8시간*28일*8,350원= 1,870,480 원으로서 290,000원이 부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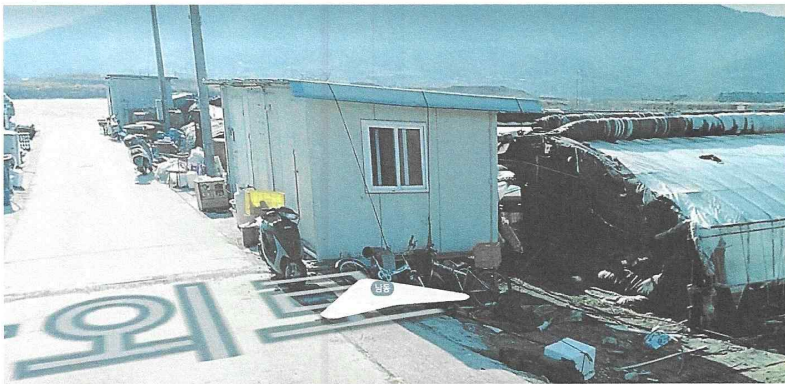
2020년 11월 임금의 경우, 월 노동일이 28일, 노동시간은 280시간으로, 이때 최저임금은 280시간*8,590원 = 2,405,200원 인데, 피진정인은 1,586,720원만을 지급하여, 818,480원의 차액이 발생함. 노동시간이 근로계약에 따라 28일*8시간=224시간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최저임금은 1,924,160 원이므로 337,440원이 약정최저임금으로부터 누락되어 착취된 것임. 근속기간의 모든 노동월의 임금을, 위와 같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삭감지급하였음.

또한 샌드위치패널 숙소를 제공하고, 월 200,000원 ~240,000 원의 임금을 별도로 착취하였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바, 월 숙박시설제공료 '140,000원'을 훨씬 넘는 추가 착취임. 이렇게 근무기간 전체에 체불임금은 약 1천5백만원에 달함.

한편 사업주는 2020년 10월 이후 근로계약상의 주소지로부터 숙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의 3개동의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서 깻잎을 심고 수확하는 노동을 시켰음. 10일에 3일 풀로 트럭에 태우고 가서 노동을 하게 하였음. 이 작업장에는 화장실도 없고, 휴게공간이 없이 때문에, 점심 휴게시간에는 노동자를 태우고 숙소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게하고 다시 자신의 차로 태우고 와서 오후노동을 하게 하였음. 불법파견 노동임.

파견법인 [redacted]이 전정인 KEO CHANTHY에게 제공한
숙소 (월 사용료 공개액 200,000 ~ 240,000 원)



주소: 밀양시 신의면 [redacted]

재래식 변소

전정인 KEO CHANTHY의
침실



- ※ 침실안에 취사시설이 있음. 냉장고는 없음.
- ※ 침실안에 욕실이 없음.
- ※ 목욕(샤워)실, 세탁장 등은 파견법인의 창고안에 있음.

<발언문 4>

방글라데시 노동자 무사(Mussa) - 산업재해 피해의 고통

사고 10분 전에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회사 관리자인 김 부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님은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은 그냥 일하고, 내일 어떤 문제인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꼭 물건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저는 사고를 당했고, 김 부장님이 처음에 ㄱ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돼서 평택 〇 병원에 데려갔고, 그 자리에는 사장님과 사장의 아드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 시간동안 손가락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의사 선생님은 이 손가락은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또다시 수술을 통해서 제 손가락은 잘려졌습니다. 손가락 치료를 하는 동안 힘든 상황이었고, 그 시기는 비자만료 기간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손이 아직 낫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 출입국으로 가서 치료를 위한 G1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기숙사에 오니 김 부장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하고, 너는 산재로 인해 월급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이 기숙사에 살아야 하니 너는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아파서 어디 갈 수 없다고, 계속 여기 있겠다고 하고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손가락이 계속 아팠고, 의사 선생님이 3차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일 뒤에 병원에서 기숙사로 돌아와 보니, 제가 살던 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산업인력공단의 방글라데시 담당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산재에서 월급의 70%를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120~13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내고 나면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쉼터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3차 수술을 끝난 후, 손가락 아픔 때문에 두통까지 생겨서 4차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술할 때, 모든 비용이 산재에서 다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23만원을 병원에 줘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오산에서 평택 〇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친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에 새살이 생겨 두 손가락이 붙어 버렸습니다. 2020년 5월 28일에 병원에 있는 담당자는 이

렇게 계속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2020년 6월 31일에 산재도 종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어떤 분을 병원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노무사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산재급여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산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대사관을 통해서 산재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병원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과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목사님, 존스선생님이 병원의 의사와 얘기를 해 손가락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020년 7월 5일에 다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이 수술비를 달라고 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0년 7월 23일까지 병원입원을 허락을 해주었지만, 2020년 7월 20일에 병원담당자는 나를 불러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노무사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왜 집에 가야하냐고 했지만, 병원 담당자는 치료가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23일에 퇴원을 해서 7월 28일에 근로복지공단에 병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8월 1일부터 오산 ㅎ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시작해서 그 의사선생님의 말에 따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다른 이상을 있는지 보려고 다른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 소변 등 다른 검사들도 많이 하라고 해서 그 검사 비용도 제가 다 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9개월 동안 5차례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많은 마취제로 인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것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손이 많이 아프고 제대로 물건을 잡지도 못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는 2020년 9월 28일에 치료가 종료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산재당한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니 산재 당하면 치료 종료되고도 6개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물리치료를 2개월밖에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일자리도 많이 없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저에게 일을 시킬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아픈 엄마와 아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습니다. 손도 이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것이고,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치료를 하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도 산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산재가 생기지 않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교육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치면 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발언문 5>

네팔 노동자 카플레(Kafle)- 퇴직금 회피하려 강제사직시키는 회사

(사례로 정리) 카플레(체불노동자)가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받는데 회사가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함. 2021.2월 임금에서 출국만기보험 금액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카플레는 이것이 부당하여, 1) 2021.2월 미지급 임금 지급 2) 퇴직금 차액 (실제 법정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 금액이 낮기에 이에 대한 차액 청구)

3) 1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을 경기도고용노동지청에 2021.05.26. 진정함.

회사는 1) 2021.2월 임금 미지급 대하여- 2월 미지급은 인정하고, 지급하였음.

2) 퇴직금 차액 및 1년 이상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회사에서는 카플레가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주장함. 그 주장 근거로 카플레가 작성했다고 하는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함 (별첨 자료 1) 사직서에는 근무기간이 2020.03.09.~2021.03.05.이며, 2021.03.06. 퇴직일로서 계속근로가 1년이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카플레는 2020.03.05.에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받아 회사로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근로계약기간 2020.03.05.(목).~2021.03.07.(일)) (별첨 2-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카플레에게 2020.03.09.(월)부터 근무를 하라고 하였고, 카플레는 2020.03.07.(토)에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서, 03.09.부터 근무하였음. 즉, 근로계약은 2020.03.05.부터 체결되었고, 회사에서 노동부에도 입사일을 2020.03.05.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를 2020.03.09.부터 일하였기에 입사일이 2021.03.09.이라는 것은 부당함.

또한 사직서에 입사일이 2020.03.09.인 것은 한국말로 잘모르기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함. 카플레는 계약만료일이 2021.03.07.(일)로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1.03.05.(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다음날 토요일 무급휴일이고, 마지막 03.07은 주휴일인 일요일이기에 당연히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런데 2021.03.05.(금) 회사에 근무를 하는 데, 오후3시경 회사 과장이 카플레에게 와서 회사가 만든 서류를 내밀며 싸인을 하라고 했다고 함. 카플레가 무슨 서류냐고 회사 과장에게 물어보니, 비자가 끝나니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고 설명해서 서명을 했다고 함. 즉, 카플레는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사직서인지를 알지 못했음. 사직서는 카플레가 쓴 것도 아니며, 회사가 내용 전체를 만들어서 카플레에게는 싸인만 하라고 한 것임. 회사는 카플레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적 사유로 사직했다고 하나, 카플레는 전혀 사직할 이유가 없었음. 어차피 마지막 근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유급주휴일)을 포기해가면서 사직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상의 근무기간은 2020.03.05.~2021.03.07.이며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별첨 4 참고) 삼성화재보험상 출국만기보험 자료를 보면 근무기간이 2020.03.05.~2021.03.07.이며 지급사유 발생일이 2021.03.08.로 되어있음. (별첨 5 참고)

즉,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

이번처럼 이주노동자도 모르고 서명한 서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 일부러, 계약기간과 달리 며칠 늦게 일을 시켜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안되게 하려는 것이 있을수 있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직서를 받으면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등을 무력화 시킬수 있기 때문임.

<발언문 5>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오늘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의 제목은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를 말한다!’입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또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결국 노예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7일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3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1분 1초가 차별과 착취, 억압의 시간임에도 말입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는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본과 정권의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길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쇠사슬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청와대 앞에서 주말마다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주체들을 조직하기 위한 장은 더 많이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로 함께 싸우기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주체당사자 조직을 비롯해서 성서공단노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화섬연맹 등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계와 과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함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적 마스크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고, 선별검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등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영하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고, 그런 곳이 숙소라며 임금에서 숙식비를 강제로 공제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관심조차 받지 못합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되려 강제추방의 위협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현실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월20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핵심 슬로건입니다. 지난 상반기 이주노동자 기숙사 근본 대책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고용허가제 폐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에 맞서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상황속에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싸우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해 가겠습니다.

<첨부> 상담 사례 - 이주민센터 친구

1. 회사 문제인데도 이직이 안된 경우

○ 사실관계

A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B회사에서 일하였다. 2019년 6월, 취업기간 연장 신청에 관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자, 고용센터에서는 B회사가 2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22명을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B회사는 A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및 고용허가 변동사유를 신고하였으나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사업장 변경이 불허되었다.

○ 분석

- A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B 회사가 고용조정으로 인해 내국인을 이직시킴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A의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A의 체류자격을 연장하지도,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도 않아 A가 3년의 노동 이후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함.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 부담을 이주노동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사안임.

2. 노동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 경과 시 문제

○ 사실관계

C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2018년 10월 입국하여 D회사에서 2달간 일한 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2개월의 구직 등록 기간동안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E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E회사에서는 구직등록기간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기간이 지난 후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불허되었다.

○ 분석

- 충분한 사실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기간 도과에 따른 불허 사유 판단으로 책임 없는 이주노동자인 C가 일을 할수 없게 됨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2항이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법률이며, 이를 적용하여 사업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해당 사례의 처분 역시 위법함
-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하여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불허처분된 사례에서, 국가인권위는 당사자의 고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경과한 경우 합법적 체류 지위의 이주노동자로서 노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18진정0852000)
- 해당 사안 역시 소 제기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이를 구제할 뚜렷한 절차나 방안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됨

상담사례- 지구인의 정류장

<사례1> 금산_농업이주노동자

불법 가설숙소의 제공 및 임금 공제

M과 S는 2019년 9월 24일 입국하여 2021년 8월 6일까지 일하고 8월 7일 퇴직하였음.

-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샌드위치 패널 가설 숙소를 제공하였음. 이 숙소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없음. 바닥 난방전기필름은 있으나, 냉방장치는 없음.

- 숙소가 달랑 방만 있음. 화장실과 욕실이 없어서, 고용주 가족의 주택 안에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이를 이용하기 불편함. 특히 저녁시간, 밤시간, 이른 아침시간에 화장실, 욕실, 세탁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소변을 볼 때는 근처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밖에 용변을 봐야 함. 이 숙소를 제공받는 대가로, M씨와 S씨는 매일 2시간의 추가노동을 지난 2년간 강요당해왔음. (월 56시간~66시간) 이 공짜노동을 하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함.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에게 계약하지 않은 장소에서 노동을 강제하여왔음. 즉,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작업장 3개 장소에 파견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음.

하루 휴게시간을 18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60분만을 허용하여왔는데, 임금을 실노동시간에 의거하여 산정하지 않고, 월급을 정하고 휴일수에 따라 일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 예를 들어, 월 노동일이 29일(노동시간 290시간)이면 1,790,000원, 28일(노동시간 280시간)이면 1,710,000원. 월 노동일이 27일(노동시간합 243시간)일때 1,480,000원만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착취하였음. 체불임금은 각각 1천만원이 넘음.

노동자들은 7월 말부터, 실제 노동시간이 근로계약과 맞지 않고, 임금이 지나치게 적게 지급된다는 점, 숙소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등으로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시정할 의지가 없으므로, 8월 7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하였음.

<사례2> 밀양 _고추농장

So씨는 2021년 3월 입국하여 일했는데 8월 3일 해고 당했음. 사업주는 4개월만에 해고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함.(자가격리비용/ 농협중앙회/차비식대/ 비노동 보상금)

- 입국후 3개월째, 매일 10시간의 노동에 몸이 지치고, 무더위로 작황이 안좋아지자, 고용주는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다가 급기야, 7월 말 '돈을 내놓고 나가라.' 며 협박을 하며 강제휴직시켰고, 이에 노동자는 항변할 방법이 없어 8월 3일 결국 250만원을 주고 퇴직하였음.

귀 서

본인 [redacted]의 권리와 [redacted]는
 관계없이 해리함에 있어 다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1. 파격리상업역 (점리 및 가내 부대비용) ₩ 600.000 원
 은 [redacted]가 [redacted]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2. 이직이후 [redacted]와 [redacted]는 어떠한
 견해에 대해서도 자정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협의장을 원칙으로 함.

3. 상호신뢰를 원칙으로 서로의 영영을 위하여
 모든 관계를 마무리함

2021. 08. 07

[redacted]

[redacted]

자가격리비용
 ₩ 1,400,000
 농협 증빙회
 ₩ 300,000
 차리 식대
 ₩ 500,000
 비동동 보상금
 ₩ 600,000
 총 > 2,800,000



▲자가격리장소 방값 32만원